

#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

## 제 1 조 (목적)

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정의)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.

1. "전임의"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내과전문의를 말한다.
2. "수련병원"이라 함은 이사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3. "교육지도자"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내과분과전문의를 말한다.

## 제 3 조 (수련)

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.

## 제 4 조 (수련기간)

1.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한다.
2.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
## 제 5 조 (전임의 정원)

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.

## 제 6 조 (수련과정)

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1. 교육목표  
내과분과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내과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 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내과분과전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.
2.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.

## 제 7 조 (수련병원장의 권한)

1.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,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, 감독한다.
2.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.

## 제 8 조 (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임용보고)

1.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각 분과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)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분과전임의 명부

- 2)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
  - 3)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
  - 4)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확인서
2.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보고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9 조 (겸직 및 중복수련금지)**

1.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, 전임의 수련 및 실무기간 동안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.
2.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.

#### **제 10 조 (수련병원의 지정)**

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내과책임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간 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,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리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11 조 (수련병원의 지정기준)**

1.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,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2.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#### **제 12 조 (수련병원에 대한 지시, 감독)**

이사장은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.

#### **제 13 조 (수련병원의 심사)**

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3년 동안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,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**제 14 조 (수련병원 지정의 취소)**

-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1.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
  2.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
  3.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
  4. 기간 내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

#### **제 15 조 (운영세칙)**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 16 조 (부칙)

1.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.
2.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인정하지 않는다.
3.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칙은 200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칙은 2011년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본 규칙은 2020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본 규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